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업무

제9판

(2022. 7.)



중앙방역대책본부

[목 차]

I. 개요

1

- | | |
|-----------------|---|
| 1. 지원목적 | 1 |
| 2. 근거 | 1 |
| 3. 지원대상 | 1 |
| 4. 지원기간·범위·방식 등 | 3 |

II.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세부 절차

4

- | | |
|----------------------|---|
| 1. 감염병 신고 및 입원·격리 명령 | 5 |
| 2. 사전통지 | 5 |
| 3. 격리해제·퇴원·퇴소 시 유의사항 | 5 |
| 4. 청구 및 비용지급 절차 | 6 |

III. 치료비 신청 구비서류 안내

8

- | | |
|--------------------------------------|----|
| 1. (의원·병원)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 | 8 |
| 2. (약국)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 | 8 |
| 「서식1」 입원·격리 치료비 지용 신청서 서식 | 9 |
| 「서식2」 약제(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서식 | 10 |
| 「서식3」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 | 11 |
| 「서식4」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및 본인부담 사전고지서 | 12 |
| 「서식5」 입원·격리통지서 재발급 안내문(사전고지서) | 13 |
| 「서식6」 코로나19 입원·격리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 | 14 |
| 「서식7」 입원·격리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관리 대장 | 15 |
| 「부록1」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 | 16 |
| 「부록2」 업무 처리별 세부 흐름도 | 17 |
| 「부록3」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Q&A | 19 |

[일러두기]

- 이 지침은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의 절차·방법 등을 안내할 목적으로 제정·운용하는 것으로서,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을 따름
- 이번 제9판은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22.6.24.)에 따라 △입원치료비는 지원 유지하고, △'22.7.11. 이후 격리 통지받은 확진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비는 지원 중단하기로 한 사항을 반영한 것임
- 관련 법령 및 지침 개정 등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에 유의

1. 개요

1. 지원 목적

- 국가 및 지자체가 확진환자에 대한 입원·격리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가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함

2. 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등) 등
 - 위 규정을 근거로 감염병으로 인해 입원 등의 치료를 받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치료비(본인부담금) 지원
 - 다만, 외국인 중 「감염병예방법」 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에 따라 **해외유입에 따른 외국인 확진환자**의 경우 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능**

3. 지원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기간 동안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

▶ **확진환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제13판)」 사례 정의에 따름

- 코로나19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또는 응급용 선별검사(긴급사용승인 제품)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의사가 진단한 사람('22.3.14~별도 안내 시*)

*근거: 의료기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 확진 인정 조치 재연장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16892('22.5.11.)호

- '22.7.11.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 확진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비(외래진료비용 및 원외처방전 관련 비용 포함)는 지원 중단▶하되,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에 한해 지원

▶ 다만, 7월10일까지 검체채취를 한 확진환자까지는 코로나19 재택치료비 지원 적용
▶ 근거: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22.6.24.)

- 다만,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가 아니더라도 **요양시설▶ 내에서 격리된 확진자가 코로나19 관련으로 외래진료(원외처방전관련 비용포함)를 본 경우에는 계속 지원**

▶ 요양시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입소시설

- **(예외대상) ①국제관례, 상호주의 원칙 적용('20.8.24.~), ②귀책사유('20.8.17.~)가 있는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③전원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을 거부한 자▶**

▶ 치료비 지원 제외 대상자
-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 치료비를 징구한 국가(정보가 확인되지 않은 국가 포함)의 국민
- 방역조치 위반자(격리명령, 집합 제한·금지 명령 등), PCR 검사확인서 허위 제출자 등
- 병원 내 전실, 병원 간 전원, 생활치료센터 입소 등 격리장소 변경 명령을 거부한 자

- **입원·격리통지서를 재발급(격리장소 변경)받은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격리 통지서 재발급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및 필수 비급여는 미지원▶**

▶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1조제4항

- **국제관례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외유입 감염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치료비는 일부 지원 또는 미지원될 수 있음**

대상 국가▶	지원범위	비고
재외국민 지원 국가	치료비 전액 지원 *비급여는 본인부담	전액 국비 지원
재외국민 미지원 국가 (정보 미확인 국가 포함)	미지원	전액 본인 부담
재외국민 조건부 지원 국가	격리실 입원료 지원 (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격리실 입원료 국비 지원 (식비, 치료비 등은 본인 부담)

▶ “대상 국가” 관련 상세내용
○ (관련 근거) 「감염병예방법」 제69조의2(외국인의 비용 부담)
○ (조회 방법) 대상 국가는 외교부를 통해 공관에 사전 고지되고, 매달 마지막 주에 질병관리청 누리집에 게시하여 익월 1일부터 적용됨
* “질병관리청 누리집(www.kdca.go.kr) > 알림·자료 > 법령·지침·서식 > 지침”에서 확인 가능

4. 지원기간·범위·방식 등

- (지원 기간) 감염병의 타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입원·격리 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원
- (지원 범위) 코로나19와 관련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치료비를 보건복지부 요양 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비와 비급여 항목은 미지원
- (필수비급여) 지원대상자의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에 따른 필수비급여 항목은 지급▶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의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3)”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인정 치료비)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의 경우 지원

▶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 주요 내용 (상세사항은 부록1 참조)

- 재택치료 집중관리군 모니터링(의료기관주도형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지원
 - '22.7.31. 검체 채취자까지 모니터링 비용 지원
-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혈액투석 시 발생하는 비용 지원
 - 혈액투석 격리실 입원료,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수가(OH011) 등
-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등) 및 주사제(렘데시비르)의 약값 지원
 - 재택치료자의 경우 그 외 조제료 등 부대비용은 미지원

- (응급실) 응급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고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은 확진환자에 대해서만 치료비(입원본인부담금)를 지원하고, 외래본인부담률인 경우 미지원
- (지원 방식) 감염병의 긴급성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사후 정산 실시▶

▶ 의료기관이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대상인 환자에게 본인부담을 면제하지 않고 납부받은 경우 환자(또는 보호자)가 직접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보건소에 청구 가능

- (지원 예산) 내국인의 코로나19 치료비는 국가와 지자체 간 공동 부담(국비 50%)하며, 외국인의 치료비는 국가가 전액 부담(국비 100%)

II.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세부 절차

	세부사항	주관
의료기관 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입원·격리통지서 발급(외국인의 경우 예외 대상 여부 확인) 시에 보건소에서 의료기관 및 생활치료센터에 치료비 지원 예외 대상 여부 안내 ○ (환자)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지정 의료기관 등 입원·격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 격리 통보 및 격리자 관리 담당 보건소 	보건소/환자
의료기관 격리치료 및 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입원·격리 치료 후 퇴원 시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로 통보 및 입원·격리 치료비 지급 예외 대상 여부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거주지 보건소 확인 불가 시 주소지 관할 보건소 ○ (보건소) 격리해제 정보 등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입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생활치료센터) 치료 시 입원·격리통지서 재발급(격리장소 변경) 	의료기관 /보건소
진료비 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부담금은 심평원에 청구 - 본인부담금 및 필수비급여는 관할 보건소*에 청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은 실거주지 보건소, 외국인은 의료기관 보건소 ○ (환자) 환자 또는 보호자가 치료비를 의료기관에 납부한 경우 직접 주소지 보건소 지원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Ⅲ. 치료비 지원 청구 구비서류' 등 참고 	의료기관 /환자 (또는 보호자)
진료비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부담금) 심평원에서 심사하여,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 ○ (본인부담금 및 필수비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인의 경우 보건소에서 심사하여 의료기관에 지급 - 외국인의 경우 질병청에서 심사하여 의료기관에 지급 	건보공단, 보건소, 질병관리청

1. 감염병 신고 및 입원·격리 명령

▶ 확진환자 신고, 입원격리 명령에 관한 상세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참조

2. 사전통지

- 입원·격리통지 시 “격리조치 등 위반 시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사전 고지
-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및 본인부담 사전고지서(서식4)”에 “증상 호전 및 격리 해제에 따른 전원 조치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치료비의 본인부담 및 과태료 부과할 수 있음”을 환자에게 사전 고지▶

▶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 변경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28072('21.12.14.)]

▶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변경 안내 및 전원 등 관련 협조 요청[중앙사고수습본부-41172('21.12.16.)]

- 방역수칙 위반자 중 유증상 발생 및 확진 시 의료기관에 이송 후, 자가격리 담당요원이 해당 병원에 “귀책사유로 인한 입원·격리치료비 자부담 대상”임을 통보
- PCR 음성확인서 허위 제출자 발생시 ① 방역당국이 관할 보건소에 “귀책사유로 인한 입원·격리치료비 자부담 대상”임을 통보 ② 유증상 발생 및 확진 시 의료기관에 이송 후 관할보건소는 해당 병원에 “귀책사유로 인한 입원·격리치료비 자부담 대상”임을 통보
- 자가격리 담당요원은 방역수칙 위반자가 유증상 발생 및 확진 시 의료기관에 이송 시, 해당 의료기관에 “귀책사유로 인한 입원·격리치료비 자부담 대상”임을 사전 통보

3. 격리해제·퇴원·퇴소 시 유의사항

- (격리해제·퇴원·퇴소) 의료인, 감염병관리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 생활치료센터장은 더 이상 입원·격리치료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확인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보건소)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원·격리 해제 시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포함) 및 환자에게 치료비 지급 예외 대상 여부(격리해제 전 지급 예외 발생 시 바로 통보) 통보
- (의료기관) ①보건소에 격리해제 통보 및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예외 대상자 파악, ②예외자인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금은 환자가 비용 부담
- (생활치료센터) ①보건소에 격리해제 통보 및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예외 대상자 파악, ②예외자인 경우 시설 사용료는 환자가 부담, 진료비는 의료기관과 동일한 절차로 시행

4. 청구 및 비용지급 절차

- (청구 및 비용지급) 의료기관 등(생활치료센터 포함)은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치료비 중
 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은 심평원으로 청구, 본인부담금은 심평원 또는 보건소로 청구,
 필수비급여는 보건소로 청구▶

- ▶ 입원격리 치료비는 보건소로 청구, 보건소에서 지급
- ▶ 집중관리군 및 요양시설 외래진료 등 치료비(요양급여비용)은 심평원으로 청구
- ▶ 지자체-건강보험공단 간 '재택치료 본인부담금 지급업무' 위탁 계약('22.1.27) 후 '22.1.1. 진료분부터는 의료기관·약국 등 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 기관·약국 등에 선 지급 후 시·도와 사후정산
- ▶ 실거주지(격리통지 및 격리자 관리) 관할 보건소 확인 불가 시
 ⇒ 환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보건소에 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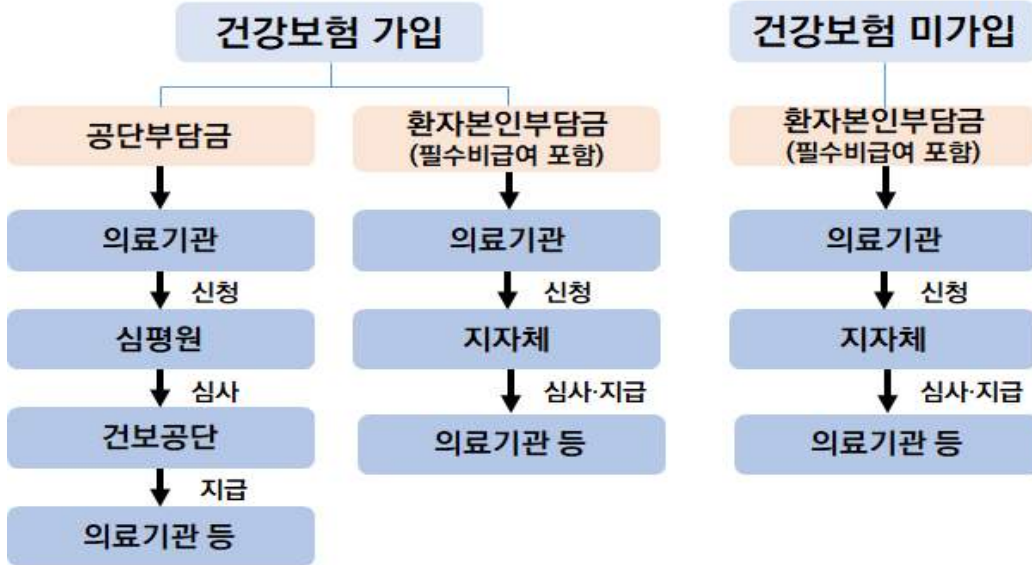
- 질병관리청 및 보건소는 청구된 서류 심사 완료 후 1개월 이내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한 해당 기관에 비용을 지급하여야 함

[치료비 지급 기관]

분류	내국인		외국인	
	가입자	미가입자	가입자	미가입자
요양급여 공단 부담	○ (공단)	-	○ (공단)	-
요양급여 본인 부담	○ (공단)	○ (지자체)	○ (질병청)	○ (질병청)
필수 비급여	○ (지자체)			
비급여	전액 본인 부담			

[청구·지급 절차 개요]

내국인



외국인



Ⅲ. 치료비 신청 구비서류 안내

1. (의원·병원)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	
비용 신청서	○ (의원·병원) 입원·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부[서식1]
공통서류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 내역 각 1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제11호 서식 및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서식1의 서식으로 제출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진단명, 격리시작일, 확진검사일, 격리해제일 명시) * 진단일, 확진검사일 등이 기재된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같음 가능 * 입원·격리 기간이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한 경우 격리해제 여부 및 치료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 또는 진료기록(경과기록) 또는 간호기록 등 추가 제출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 확진환자의 최초 양성결과지는 진단일, 확진검사 결과 등이 기재된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같음할 수 있음 *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 입원·격리 시작 시 최초 검사결과서부터 격리해제 시 마지막 검사결과서까지 모두 제출 (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 포함)
입원·격리대상자 (또는 보호자) 신청 시 제출서류	○ 통장(계좌) 사본 1부
	○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1부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의료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2. [약국]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

제출 서류	
공통서류	○ 약국이 발행한 '약제비 영수증·계산서' 1부
	○ 환자의 '처방전 사본' 1부
	○ 필수비급여 약제 처방시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필수비급여 소명서식' 1부
약국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1부 ○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입원·격리대상자 (또는 보호자) 신청 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한 서류 1부
	○ 통장(계좌) 사본 1부
	○ (보호자가 신청 시) 지원 대상자와 본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서식 1

입원·격리 치료비 비용 신청서 서식

입원·격리 치료비 비용 신청서

접수 보건소명		접수일자
신청인 (개인 또는 의료기관)	성명(의료기관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입원·격리(대상자와의 관계(의료기관은 작성 생략))
	주소	
입원·격리 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국적
	신고일자	
	주소	
입원·격리 세부사항	진단명	
	격리시작일	격리해제일
	확진검사 확인일	
진료비	청구금액(본인부담금 및 필수비급여)	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제4호 및 제6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입원·격리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귀하

제출 서류 ²⁾

비용 신청서	1. 입원·격리 및 외래 비용 신청서 1부[서식1]	
공통서류	○ 의료기관이 발행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 내역 각 1부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지 제6호~제11호 서식 및 「진료비 세 부산정내역 서식 등에 관한 기준」 서식의 서식으로 제출 * 간이 영수(수기용)는 구비서류로 인정하지 않음	<input type="checkbox"/>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1부(진단명, 격리시작일, 확진검사일, 격리해제일 명시) * 진단일, 확진검사일 등이 기재된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같음 가능 * 입원·격리 기간이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을 초과한 경우 격리해제 여부 및 치료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소견서 또는 진료기록(경과기록) 또는 간호기록 등 추가 제출	<input type="checkbox"/>
	○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 확진환자의 최초 양성결과지는 진단일, 확진검사 결과 등이 기재된 '법정 감염병 신고서'로 같음할 수 있음 *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 입원·격리 시작 시 최초 검사결과서부터 격리해제 시 마지막 검사결과서까지 모두 제출(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 포함)	<input type="checkbox"/>
입원·격리대상자 (또는 보호자)	○ 통장(계좌) 사본 1부	<input type="checkbox"/>
신청 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가능 서류 1부	<input type="checkbox"/>
의료기관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와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1부	<input type="checkbox"/>
	○ 사업자등록증 1부	<input type="checkbox"/>
	○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input type="checkbox"/>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1) 「신고일자」는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신고한 날짜로 입원·격리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합니다.
- 2)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는 오른쪽 네모박스에 √ 체크합니다.

서식 2

약제(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서식(약국)

약국(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접수 보건소명		접수일자
신청인(약국)	약국명	전화번호
재택치료 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등
	전화번호	<input type="checkbox"/> 내국인 <input type="checkbox"/> 외국인(국적:) ^①
약제(원외) 처방비	본인부담금	원
	비급여	원
	총 신청액	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제4호, 제6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약제(원외처방) 비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귀하

제출 서류

공통서류	1. 약국이 발행한 '약제비 영수증·계산서' 1부	<input type="checkbox"/>
	2. 확진 환자의 '처방전 사본' 1부 ^②	<input type="checkbox"/>
	3. 비급여 약제 처방시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필수비급여 소명서식' 1부	<input type="checkbox"/>
약국에서 신청 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1부	<input type="checkbox"/>
	2. 사업자 통장(계좌) 사본 1부	<input type="checkbox"/>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질병관리청장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작성방법

○ 내·외국인을 표시하고, 외국인의 경우 국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국적을 기입

[처방전 사본 제출 관련 유의사항]

본 서식인 “약국(원외처방) 비용 신청서” 또는 “약제비 영수증·계산서”의 내용만으로도 “처방전 사본”에 기재되어 있는 환자의 상세정보 등에 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처방전 사본 미제출 가능

●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서류는 오른쪽 네모박스(□)에 √ 체크합니다.

<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및 본인 부담 발생 안내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 (지원대상)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 (지원기간) 감염병의 타인 전파를 방지하기 위하여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입원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해제한 날*까지 지원****

* 코로나19 대응지침 격리해제일 기준 참조(※)

** 단,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대상자가 코로나19 외 질환으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22.4.25. 기준, 코로나19 대응지침 변경 등에 따라 수시 변동 가능)**
가. 임상경과 기반

- (기간) 예방접종력과 관계없이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 경과▶▶

* 7일 차 자정(24시)(8일 차 0시) 해제

- (증상) 상기 기간 동안 무증상 상태 지속 또는 최소 24시간 동안 해열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증상 기준'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격리해제 연기 가능

▶ **임상증상 호전 기준(기저질환자)**

- 기저질환(증상)으로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호흡기질환(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감염 전과 비교하여 임상증상에 차이가 없는 경우, 호전으로 판단 가능

나. 임상경과 기반(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 ▶ 위중증 : 고유량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 CRRT 치료 적용

- (기간) 검체채취일로부터 최소 10일 경과, 최대 20일까지 적용(20일 경과 시 격리해제)

- (증상) 최소 48시간 동안 해열 치료 없이 발열이 없고 임상증상이 호전되는 추세

▶ **임상증상 호전 기준(기저질환자)**

- 기저질환(증상)으로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한 호흡기질환(증상)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감염 전과 비교하여 임상증상에 차이가 없는 경우 또는 인공호흡기 등 생명연장 치료가 안정적일 때, 호전으로 판단 가능

▶ **검체채취일로부터 20일 경과 시 증상 기준과 관계없이 격리해제함**

* 중증 면역저하자에 대해서는 '코로나19-대응지침' 2. 확진환자 격리해제 > 나. 임상경과 기반 격리해제 기준(위중증 단계에 해당하거나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 참조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에 따라 중증도의 변경,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전원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부 시,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전원 등의 조치를 거부하는 경우 동법 제83조 제3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본인(환자)(또는 보호자)은 위 사항에 대해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0 . . .

본인(환자)(또는 보호자) : (인)

서식 6

코로나19 입원·격리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

코로나19 입원·격리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

접수보건소명		접수일자	
격리기관	격리기관명(의료기관)		
	전화번호		
	주소		
입원·격리 대상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국적	
	주소(실거주지)		
입원·격리 세부사항	진단명		
	격리시작일	격리해제일	
	입원일(입소일)	퇴원일(퇴소일)	
	변경 통지된 격리기관명*		
	입원·격리통지서 재발급일자(명령일)		
	입원·격리치료비용 지원 기간		
	입원·격리 치료비용 지원 불가 기간*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 여부 (입원·격리 치료비용 지원기간)	<input type="checkbox"/> 수납	<input type="checkbox"/> 미수납

* (입원·격리치료비용 지원 불가 기간) 입원·격리통지서 재발급(격리장소변경) 거부에 따른 입원·격리 치료비용 지원 불가 기간으로, 재발급 거부 익일부터 해당 격리장소 퇴원일 또는 격리장소변경 이행일까지

담당의 소견 및 시·도 관리반에서 동일 병원 전실, 의료기관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 결정등 입원·격리통지서 재발급(격리장소변경)시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입원·격리 치료비용 미지급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부록1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

연번	지원 내용	주요 내용	적용 기간
1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를 격리입원 진료하는 경우	'20.1.4.~별도 안내 시
2	노인요양시설 전담반 방문료	▸ 노인요양시설 내 거주하는 코로나19 확진환자를 대상으로 처방, 처치 등 방문진료 실시하는 경우 산정 * 코로나19 확진환자의 격리기간 내에서만 치료비 지원	'22.4.5.~8.31.
3	감염병 전담 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감염병전담정신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에 대해 입원 1일당 1회 산정	'21.12.13.~별도 안내 시
4	코로나19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에 대해 입원 1일당 1회 산정	'21.12.13.~별도 안내 시
5	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집중관리군 모니터링 관련)	▸ 지자체가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으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재택치료 환자에게 24시간 건강 모니터링 및 비대면 진료 등 환자 관리 시행 시 산정(~7.31.검체 채취자까지) * 집중관리군 모니터링' 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지원 계속	'21.9.25.~별도 안내 시
6	전용생활치료센터 및 거점생활치료센터 환자관리료	▸ 코로나19 확진자가 격리기간 중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또는 거점생활치료센터 에서 격리된 경우	'21.10.5.~별도 안내 시
7	혈액투석 격리실 입원료	▸ 혈액투석 환자 중 확진자 를 대상으로 격리실에서 혈액투석 시 격리실 입원료 산정 *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환자도 지원	'21.12.13.~별도 안내 시
8	혈액투석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 혈액투석 환자 중 확진자 를 대상으로 인공신장실 내 코호트 격리투석 시 인공신장실 내 격리관리료 산정 *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환자도 지원	'21.12.13.~별도 안내 시
9	혈액투석 수가 (수가코드: OH011)	▸ 확진자에게 혈액투석 을 시행하는 경우 혈액투석 행위 수가(수가코드: OH011) 200% 인상 *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환자도 지원	'20.12.24.~별도 안내 시
10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및 주사제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등)와 주사제(렘데시비르)의 약값은 지원 * 그 외 조제료 등 부대비용은 본인부담	별도 안내 시까지

부록 2

업무 처리별 세부 흐름도

○ 해외유입 외국인 입원·격리 치료비용 자부담 절차

		세부사항	주관	
1	외국인 치료비 자부담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호주의 원칙 및 귀책사유 해당 해외유입 외국인 자부담 사전 안내 매월 말 홈페이지 공지 / 익월 1일부터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외교부 질병관리청 	
2	신고 및 보고	<p style="text-align: center;">상호주의 원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 입국후 격리기간 중 확진으로 격리입원시 질병보건통합보건의시스템신고, 비고란에 반드시 입국 날짜 및 자부담 대상 여부 기입 (보고) 자부담 대상인 경우 외국인 거주지 및 의료기관 관할 보건소, 질병관리청 보고 	<p style="text-align: center;">귀책사유</p> <p>방역수칙 위반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 귀책사유 발생시 지자체 전담 관리 (보고) 귀책사유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청 보고 <p>PCR 음성확인서 허위제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 귀책사유 발생시 방역당국 관리 (통보) 방역당국은 관할 보건소에 자부담한지임을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거주지 관할보건소 검역소 임시생활 시설 질병관리청
3	확인 및 입원치료 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치료비 자부담 환자여부를 관할 보건소에 확인 (보건소) 입원격리 통지서 발급시 자부담 대상자 확인 -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건소) 입원치료 통지서 발급시 자부담 대상자 확인 -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해당의료기관 또는 생활치료센터에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관 실거주지 관할보건소
4	격리 해제 등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격리 해제 또는 전원 퇴원 시 관할 보건소에 치료비 자부담 대상자 인지 확인 (보건소)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환자에게 치료비 부담 후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환자 자부담 내용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격리 해제 또는 전원 퇴원 시 관할 보건소에 치료비 자부담 대상자 인지 확인 (보건소) 환자에게 자부담 고지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환자에게 치료비 부담 후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환자 자부담 내용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료기관 실거주지 관할보건소

○ 입원·격리통지서 재발급 절차

◆ 입원·격리통지서 재발급 절차 상세사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참조

		세부사항		주관
1	격리장소 변경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의료기관 내 병실 전실 · 타 의료기관 전원 · 생활치료센터 입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담당의 · 보건소·사도 환자관리반
2	안내 및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격리통지서 재발급(장소 변경 명시) · 입원·격리통지서 재발급 안내문(서식3) 고지 및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건소 · 의료기관
3	환자 이송 및 격리 안내	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자 전실 · 환자 전원 or 입소 * 의무기록 제출 	비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격리장소 변경거부 사실을 실거주지 보건소에 통보 · (보건소) 환자에게 격리장소변경 불이행 이후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중단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 실거주지 보건소
4	퇴원시 환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료비 지원 절차에 따른 입원·격리치료비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환자에게 입원·격리치료비용 지원 불가 기간 동안 발생한 환자본인부담금 징수 ② '입원·격리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 보고서(서식4)' 작성 및 실거주지 보건소 제출 · (보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원·격리통지서 재발급 거부 환자관리 대장(서식5)' 작성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관 · 실거주지 보건소

* 의무기록

- ① 코로나19 병원체 검출 결과가 기재된 검사결과서 각 1부
 - 민간검사결과서, 보건환경연구원 병원체 검사결과서 등
 - 입원·격리 시작 시 최초 검사 결과서부터 격리해제 시 마지막 검사결과서까지 모두 제출(확진환자의 경우 최초 양성 결과지 포함하여 입원·격리치료비 신청 시 제출)
- ② 치료를 담당한 병원은 환자의 치료에 필요한 의무기록 등의 정보를 전원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에 제공
 - 이에 따른 의무기록 발급 비용은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가능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목적] 입원·격리 치료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으로 취하는 조치이며 입원·격리 치료와 관련된 치료비용은 시·도와 국가가 공동 부담하고 있습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기간

Q1.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대상자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기간 동안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확진환자
 - * 국내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미가입자 포함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입원 격리 여부 변동 가능
- '22.7.11.부터 코로나19 확진환자에 대한 재택치료비(외래진료비용 및 원외처방전 관련 비용 포함)는 지원 중단
 - * 다만, 검체 채취일이 7월 10일까지인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재택치료비는 격리해제일까지 지원 계속

Q2.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

- 외국인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은 국내감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해외감염의 경우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
 - 감염병신고웹에 추정감염지역이 국내로 신고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 감염 경로가 해외인 경우 입국일 기준 상호주의*에 따라 차등 지원
 - *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행('20.8.24부터)에 따라, 입국일 기준 해당 월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에 따른 차등 지원
 -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방역조치위반(격리명령,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미지원

Q3.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기간?

- 입원·격리 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격리해제*된 날까지 지원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격리해제 기준’ 참조
 - * 격리해제되는 퇴원일(통상적 8일차)까지의 본인부담금 지원

Q4. 코로나19 격리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7.11.~)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 개편 방안(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22.6.24.))

- 보건소에서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아 격리기간 동안 입원 또는 격리시설에 입소한 코로나19 확진환자
 - 요양시설* 내에서 격리된 확진자가 코로나19 관련으로 외래진료비(약제비 포함) 지원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입소시설
- '22.7.11.로 격리 통지받은 확진환자부터 재택치료비는 지원 중단
 - 다만, 검체 채취일이 7월 10일까지인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재택치료비는 격리해제일까지 지원 계속
- 응급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고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은 확진환자
 -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확진되어 치료를 받고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 받은 확진환자의 경우 지원 대상
- 집중관리군 모니터링(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비용 지원
 - 재택치료 환자관리료는 지원하고 그 외 약제비 등 본인부담금은 미지원

2. 지원 및 청구범위

Q5.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범위는?

- 코로나19와 관련한 입원치료,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는 응급실 치료, 조사, 진찰 등에 드는 경비를 지원, 코로나19와 무관한 치료비와 진단검사비는 미지원
- 격리기간 동안의 치료에 대한 비용지원이므로, 입원 기간 중 처방된 항목(퇴원약, 퇴원환자 조제료 등)이라도, 격리기간 종료 후에 대한 치료는 지원 대상이 아님
- 담당의(소견) 및 시·도 환자관리반에서 동일 의료기관 내 병실 전실, 타 의료기관 전원 및 생활치료센터 입소를 결정한 경우 '입원·격리통지서를 재발급(입원/격리장소 변경 통보)할 수 있으며 환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입원·격리 통지서 재발급일 익일부터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에 대한 비용은 환자가 부담

Q6. 코로나19 입원·격리기간 동안 기저질환 및 합병증의 치료비 지원 여부는?

- 기저질환 등 코로나19와 관련이 없는 질환에 관하여는 자부담 대상
 - 입원·격리 치료기간 동안 코로나19와 무관한 상병을 동시에 진료한 경우, 진료내역을 분리하여 청구

Q7. 요양시설 입소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진료를 보는 경우 지원 여부는?

-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외래진료를 보는 경우임에도 진찰료, 약제비 등 코로나19 관련 치료비에 대해서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입소시설

Q8. '집중관리군 모니터링' 지원 여부는?

- 의료기관주도형 재택치료 환자관리료의 본인부담금 지원 유지('22.7.31.까지)
- 집중관리군 모니터링비를 제외한 약제비의 본인부담금은 미지원

Q9. '내국인 건강보험 가입*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치료비 중 공단부담금뿐만 아니라 본인부담금까지 공단에서 일괄 지급 가능한 경우는?

* 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

- ① 요양시설* 입소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외래진료를 보는 경우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시설, 「정신건강복지법」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입소시설
- ② 검체 채취일이 7월 10일까지인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재택치료비
- ③ 집중관리군 모니터링(의료기관 주도형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비용
- ④ 입원환자의 먹는 치료제 원외처방(약국) 시 발생하는 비용

Q10. 요양시설 입소한 코로나19 확진환자 외래진료 시 환자와 의료기관의 확인사항은?

- (환자)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요양시설 격리 중임을 알 수 있는 격리통지서(SMS, 서면통지서 등) 지참
- (의료기관) 요양시설 격리 확진환자 진료 시 격리통지서(SMS, 서면통지서 등), DUR 등을 통해
 - ①격리기간, ②요양시설 격리자, ③건강보험 가입유무 등을 확인하여 환자본인부담금을 심평원 또는 보건소에 청구

Q11. 재택치료자의 먹는 치료제 처방과 주사제 투약 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조제료 등) 지원 여부는?

- 재택치료자의 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와 주사제(렘데시비르) 약값은 지원하되, 조제료 등 부대비용은 미지원

Q12. 코로나19 확진환자가 혈액 투석 치료를 받을 때 지원 여부 및 범위는?

- 코로나19로 확진된 혈액투석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격리실 또는 인공신장실 내 코호트 격리 투석실 이용 시, 격리실 입원료,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수가 중 일부(OH011) 등 지원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치료비, 부록1 참조)
- 재택치료 중인 혈액투석 환자가 혈액투석을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격리실을 이용한 경우에도 지원

Q13. 입원환자의 먹는 치료제 원외처방(약국) 시 발생하는 비용 지원 여부는?

- 입원환자의 먹는 치료제를 원외(약국)에서 처방 시 약값과 부대비용(조제료 등)까지 지원
- * 입원환자 대상 코로나19 경구치료제 원외처방 시 요양급여 적용 안내(보험급여과-794호, '22.2.10.) 참고

Q14. 응급실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는?

- 응급실에서 코로나19 관련 치료를 받고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받은 확진환자에 대해서만 치료비(입원본인부담금)를 지원하고, 외래본인부담률인 경우 미지원
-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확진되어 치료를 받고 입원 본인부담률을 적용 받은 확진환자의 경우 지원 대상

▶ 응급의료수가 본인부담률 산정 기준(예시)

응급의료기관	입원 본인부담률	외래 본인부담률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	중증응급환자가 아닌 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가 아닌 환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6시간 이상 체류	6시간 미만 체류

※ 중증응급환자 : 한국형 중증도 분류기준(KTAS) 1, 2등급
중증응급의심환자 : 한국형 중증도 분류기준(KTAS) 3등급

Q15.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확진 환자의 경우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여부는?

○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날부터 퇴소하는 날까지 코로나19와 관련된 입원·격리 치료비는 지원, 생활치료센터에서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참조)

Q16. 재택치료 중인 확진환자가 코로나19 외 질환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여부는?

○ 입원·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 코로나19 이외의 질환으로 병원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하는 날부터 격리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Q17. 코로나19 이외의 질병 치료 목적으로 의료(요양)기관에 입원해 있던 환자가 의료기관 내 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되어 해당 의료(요양)기관의 격리실로 이동한 경우 지원 여부는?

○ 입원·격리치료 명령이 시작된 날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격리실 입원료 및 코로나19 진단검사비에 한하여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 의료(요양)기관 내 코호트 격리된 접촉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에 따라 격리 해제 시점 변동 가능

Q18. 코로나19로 인하여 발생하는 입원·격리 치료비 중 지원 가능한 비급여 범위는?

○ 코로나19 입원치료에 따른 필수 비급여 부분 인정

- 코로나19 입원·격리 치료비 비급여 지원 안내(20.7.9.)에 따라 필수 비급여 청구 시 급여 대체 가능 품목은 없었는지 판단하여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3) 제출

- 다만, 격리실 입원료(상급병실사용 차액 포함)와 코로나19 pcr검사료는 비급여의 경우라도 건강보험 수가 수준(전액 본인부담)으로 지원*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 감염병 관리사업 지침, 보건복지부고시 제 2021-217호(2021.8.11.) 참조

○ (검사료) 호흡기 감염병 검사의 경우 급여(건강보험 적용)로 전환하거나,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2)’ 제출 시 지원

-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 호흡기바이러스 19종 PCR 등 호흡기 검사

〈 호흡기 검사료 지원 불가 사례 〉

- 인플루엔자 A, B 바이러스 항원검사, 호흡기바이러스 PCR 등 호흡기 검사는 코로나19와 선별을 위해 초기 진단 목적으로 시행할 경우 지급 가능하나 **코로나19 확진 이후 시행하는 경우는 지급 불가**
 -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342호 행정해석(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선별진료소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항원검사[간이검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등 참조하여 급여 가능한 항목은 급여 청구

- (제증명료) 지침상 명시적으로 지급 제외토록 되어 있으나, 전원 등 방역당국 필요에 의한 발생된 경우 비급여 지원
 - 전원 등 방역당국의 필요에 의해 발생되었음을 전원소견서,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로 제출 시 지원
 - PACS CD COPY, 검사기록지 사본
- (약제·치료재료) “코로나19 관련 필수 부분 비급여 진료비 소명 서식”(서식3) 제출 시 지원
- (병원비품) 비급여 사항도 아니며, 입원료에 포함된 항목으로 산정 불가
 - 환의, 체온계, 이불, 시트, 대변기, 소변기 등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의료기관의 비품 등 참조
- (식대) 보호자 식대는 코로나19 치료와 무관하여 지원 대상 제외

Q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하여 의약품 처방 시 청구가 가능한지?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원내 처방(조제)할 수 있으며, 처방된 약제비만 청구 (의약품관리료 등 관련 행위는 청구 불가)
 - 단, 코로나19 경구치료제(팍스로비드 등)를 투약하는 경우 의약품관리료, 입원환자 조제·복약 지도료 등 산정 가능

Q20. '코로나19 입원·격리치료비 지원 및 본인부담 사전고지서'는 언제,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 '21.12.17부터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이 변경 시행됨에 따라, 입원 환자에 대해 사전에 고지 내용 등에 대해 안내
 - 격리치료비 지원 및 전원 조치 거부에 따른 본인부담 사전고지(의료기관→환자)
 - 환자 입원 시 환자 및 보호자에게 ①격리치료비 지원 제도(대상, 기간 등) 및 ②증상 호전 및 격리해제에 따른 전원 조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으며, 거부 시 치료비 본인부담 및 과태료 부과함을 안내
 - * 유증상 확진환자 격리해제 기준변경 안내 및 전원 등 관련 협조 요청(중수분-41172, 2021.12.16.)

Q21. 외국인 입원·격리 치료비 지급 방법은?

- 의료기관에서 관할 보건소에 청구하고 질병관리청에서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 「감염병예방법」 제67조 및 「2020년도 감염병 관리 사업 지침」 참조
- 다만, 상호주의에 원칙에 따라 치료비를 일부지원하거나 미지원 할 수 있고,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지 않음

〈외국인 진료비 지원 절차(의료기관/환자)〉

- ① 보건소 신고 및 입원·격리통지서 발급
- ② 병원 입원·격리 등 진료
- ③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납부시에는 환자(또는 보호자)가, 미납부시에는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에 입원(격리) 비용 신청서 제출
- ④ 제출서류 검토 후 보건소장이 시도를 거쳐 질병관리청장에게 청구
- ⑤ 제출서류 검토 후 질병관리청장이 신청자(환자 또는 의료기관 등)에 지급

Q22. 입원·격리 비용 신청서 서식 안내의 제출서류 중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에 대해 ‘법정 감염병 신고서’로 같음되는지?

- ‘법정감염병 신고서’로 같음될 수 있으나, 법정감염병 신고서만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세부 내용 파악이 어려워, 발열 등 코로나 19 임상증상, 코호트 격리, 격리시작 및 해제일 등의 기록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응급기록, 진료기록, 경과기록, 활력 징후기록지 등)

Q23. 환자가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추후 청구하는 방법은?

- 환자가 주소지 보건소에 직접 입원·격리 치료비 신청 서류를 제출하여 청구
- 환자가 보건소에 직접 입원·격리 치료비 신청 서류를 제출

Q24.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 확진환자로 신고된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은?

- 재택치료비 지원 중단('22.7.11. 격리통지자부터)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와도 외래진료 시 발생한 진찰료 및 약제비 등은 본인이 부담

- 다만, 양성확인 이후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등) 또는 주사제(렘데시비르) 코로나19 치료제의 약값은 지원하지만 그 외 비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 단, 코로나19와 관련 없는 치료비는 자부담

Q25. 주민등록이 말소된 내국인의 경우 입원·격리 치료비 지원 절차는?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관할 보건소에서 지원

Q26. 병실 부족으로 다인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 격리실로 운영 또는 중환자실 내에서 단독 격리하는 경우 지원은?

- 병실부족으로 다인실 또는 일반입원실을 1인 격리실로 운영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1인용 격리실 입원료로 인정

3. 기타

Q27. 산재, 보훈 등 다른 진료비 지원제도와 관계는?

- 보훈환자, 산재환자 등 다른 지원제도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제도(보훈, 산재)에서 보호(지원)하고 일부 환자본인부담금(필수비급여) 등 기존 제도에서 보호되지 않는 항목은 입원·격리 치료비로 지원

Q28. 입원·격리 치료비 외 중복되는 지원은?

- 입원·격리 치료비 대상자는 생활지원비 중복지원 가능
 - 진단검사비는 입원·격리 치료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중복 지원 불가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원 불가